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65호

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」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대국민 규제개선 의 일환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의 비행검사 사전 신청기간의 단축과 불특정 기관과의 협의 조항을 개선하고자 행정규칙(고시)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전 신청기간을 당초 1개월(30일)에서 14일로 단축 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비행검사 요청서 항목의 불특정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삭제(안 제4조제4항제5호)
- 다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법령 위임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(안 제17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 까지 이메일(cnscodi@korea.kr) 또는 우편(아래 주소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우편 보내실 곳

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
정책과(전화번호: 044-201-4357, FAX:044-201-5637, 메일 : cnscodi@
korea.kr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
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
항행위성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